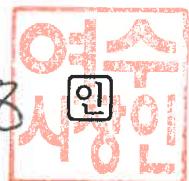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29 일

여 수 시 장 2023.12.29



여수시 조례 제2023호

붙임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입생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 등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급하고,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복 등 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고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여수시 교복 등 지원금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input type="checkbox"/>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전입일자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input type="checkbox"/>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	원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 등(교복·체육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p>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p> <p>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 - 성명, 연락처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p> <p>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p> <p>※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등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p> <p>▶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별지 제2호 서식]

여수시 교복 등 지원금 신청 검토 조서

(제6조제2항 관련)

(○○학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학생”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삭 제〉
5.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으로 한다.	〈삭 제〉
6.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삭 제〉
7.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자 중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다문화가족·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입생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 등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 ①·② (생 략)	제6조(신청 및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교복 등 지원금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복 등 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③ ----- ----- --- 지급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고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한다.